

## 수련프로그램 평가



김재문

대한신경과학회 수련이사



### 지도전문의 입문교육 시행개요

- 지도전문의로서의 필요한 교육자적 자질을 함양하고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도전문의 자격 기준에 지도전문의 입문교육을 도입하여 실시

### 지도전문의 교육 목표

- 지도전문의가 갖추어야 할 교육자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열거할 수 있다.
- 지도전문의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전공의들이 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 소속과 전공의가 수련해야 할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소속과 전공의 교육 시 효과적인 교육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소속과 전공의에 대한 평가 및 수련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법을 설명할 수 있다.
- 전공의의 수련과 관련된 제 규정을 설명할 수 있고, 이를 준수한다.

### 교육 필수 주제

- 교육자로서 지도전문의의 역할과 책임
- 지도전문의 및 전공의 윤리
- (효율적인) 교육 방법 및 (수련프로그램) 평가방법
- 소속과 전공의 연차별 수련 목표 및 내용
- 소속과 전공의 수련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소속과 전공의 자격시험 및 취득요건
- 전공의 수련관련 규정

## When I was a resident.....

- Perhaps the key elements of clinical training in neurology has not changed, but
- How has the health system changed since you were a resident?
- How has your practice changed since graduation?
- The explosion of knowledge coupled with dramatic shifts in health care finance

➡ Changes in educational constructs for training program

## 수련교육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

- ❖ To certify the competence of future practitioners
- ❖ To discriminate among candidates for advanced training
- ❖ To provide motivation and direction for learning
- ❖ To judge the adequacy of training programs
- ❖ To prepare the best possible physician to secure the future of neurology
- ❖ Require not only excellence in clinical neurology, but also an appreciation of our health system & how one's success in patient care will be measured using the technology of the future (Peltier WL, 2004)

## 수련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외부 평가

병원신임평가

대한병원협회

내부 평가

자체 평가

소속수련병원(기관)

수련실태평가

대한신경과학회

피교육자 자율평가

전공의

피교육자 자율평가

학생, 전공의



## 병원신임평가에 대한 근거

- 의료법(2010. 1. 8)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011. 11. 23)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2011. 12. 8)
- 수련병원(기관) 지정 기준 (대한병원협회)
-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대한병원협회)

## 병원신임평가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011. 11. 23)

#### 제6조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

심사하여 제7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

#### 제8조 (전공의의 정원)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시킬 전문과목별 전공의의 정원은  
각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병원신임평가**

**제21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 및 제8조에 따른 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를 의료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수련병원(기관) 지정 기준**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병원신임평가**

**신경과, 병원신임평가서 작성 기준** 개요

- **전속전문의, 지도전문의 및 전공의 현황, 인력현황**  
 : 평가년도 5월 1일 기준(학회: 9월 첫째 월요일)
- **시설 및 기구, 장비:**  
 : 평가년도 5월 1일 기준(학회: 6월 30일)
- **진료 실적 및 임상신경생리학 검사실적:**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 단 해당병원의 회계연도 및 통계기준 가능
- **전공의 당직 및 휴가:**  
 : 전년도 3월 1일 ~ 평가년도 2월 말일 기준
- **학술활동:**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기준

**평가서 작성 시점의 전문의에 대한 정의(병원협회)**

- **전속전문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정규 급여를 받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임전문의.
- **지도전문의:** 전속전문의 중 **수련병원(기관)**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전공의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의.
- **지도전문의 여부 기준:** **평가년도 5월 1일 기준**(학회: 9월)  
 (2016년 5월 1일 이전 발령자)
- **신경과 수련병원에서 지도전문의로 4년 이상 근무한 전문의 수**

**신경과 병원신임평가서(2016 개정) 문항 편성 및 배열**

**개요 및 작성지침**

- A. 수련기관 평가 영역
- B. 교육수련 프로그램 평가 영역
- C. 전문의 평가영역
- D. 의무기록 충실향 평가
- E. 기타

**병원신임평가서** 문항 편성 및 배열

**A. 수련기관 평가 영역**

과별업무 규정,  
 전문의 현황,  
 전공의 현황,  
 시설 및 기구 현황,  
 수련교육 관련시설,  
 진료실적,  
 학술자료 구비,  
 학술대회 지원실적,  
 전공의 당직현황,  
 전공의 휴가현황

**병원신임평가서** 문항 편성 및 배열

**B. 교육수련 프로그램 평가 영역**

교육수련프로그램 구비,  
 전공의 원내/외 학술활동,  
 전공의 환자취급범위,  
 전공의 논문실적,  
 전공의수 대비 진료실적,  
 전공의 수첩기재 상태,  
 전공의 수련평가,  
 교육프로그램 이행정도,  
 교육수련프로그램의 적절성 평가,  
 전년대비 교육수련프로그램 개선상황

신경과 병원신임평가서	문항 편성 및 배열
C. 전문의 평가 영역	
지도경력	
전문의 세부전문분야	
(전문의 수 대비 진료실적)	
(전문의 논문실적)	
(전문의 학술활동)	

신경과 병원신임평가서	문항 편성 및 배열
D. 의무기록 충실성 평가	
전공의의 진료 활동에 대한 평가	
임상신경생리학검사 실기 활동 및 보고서 작성	
입원/퇴원 기록지 작성	
진료 경과기록지 작성	
E. (기타)	

○ 복권신입기사 전문부문 영역 개정안			
평가영역	평가내용	점수부여	판단 근거
A 수면기준 평가	A.1 과열 알루미늄	O	행동과 환경의 차별화 및 가교 인정 (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수면부문(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수면부문(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A.2. 신증상 및 증후	O	행동과 환경의 차별화 및 가교 인정 (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수면부문(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A.3. 원인별 현황	O	행동과 환경의 차별화 및 가교 인정 (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수면부문(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A.4. 시설 및 기구 현황	O	행동과 환경의 차별화 및 가교 인정 (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수면부문(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A.5. 수면부록 관련 시설 현황	O	행동과 환경의 차별화 및 가교 인정 (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수면부문(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A.6. 진단 및 치료	O	행동과 환경의 차별화 및 가교 인정 (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수면부문(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A.7. 치료 및 예방	O	행동과 환경의 차별화 및 가교 인정 (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수면부문(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A.8. 학제적 협의 및 기록 관리	O	행동과 환경의 차별화 및 가교 인정 (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수면부문(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A.9. 진료 및 담당 부서별 특성	O	행동과 환경의 차별화 및 가교 인정 (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수면부문(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A.10. 진료 및 추적 관리	O	행동과 환경의 차별화 및 가교 인정 (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수면부문(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A.11. 진료 및 후속 관리	O	행동과 환경의 차별화 및 가교 인정 (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수면부문(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B 교육수준 평가	B.1. 표준수준 프로그램별 구현	O	행동과 환경의 차별화 및 가교 인정 (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수면부문(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B.2. 동반학습 및 학습 활동	O	행동과 환경의 차별화 및 가교 인정 (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수면부문(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B.3. 학습 내용 및 학습 목표	O	행동과 환경의 차별화 및 가교 인정 (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수면부문(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B.4. 학습 내용 및 학습 목표	O	행동과 환경의 차별화 및 가교 인정 (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수면부문(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B.5. 학습 내용 및 학습 목표	O	행동과 환경의 차별화 및 가교 인정 (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수면부문(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B.6. 학습 내용 및 학습 목표	O	행동과 환경의 차별화 및 가교 인정 (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수면부문(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B.7. 평가 및 평가 결과	O	행동과 환경의 차별화 및 가교 인정 (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수면부문(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B.8. 평가 및 평가 결과	O	행동과 환경의 차별화 및 가교 인정 (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수면부문(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B.9. 표준수준 프로그램별 평가 결과	O	행동과 환경의 차별화 및 가교 인정 (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수면부문(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B.10. 연계 강의 프로그램 수준별 평가 결과	O	행동과 환경의 차별화 및 가교 인정 (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수면부문(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C 전문의 평가	C.1. 지침 정립	O	행동과 환경의 차별화 및 가교 인정 (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수면부문(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C.2. 지침 수립 및 적용	O	행동과 환경의 차별화 및 가교 인정 (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수면부문(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C.3. 지침 수립 및 적용	O	행동과 환경의 차별화 및 가교 인정 (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수면부문(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C.4. 지침 수립 및 적용	O	행동과 환경의 차별화 및 가교 인정 (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수면부문(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D 의무기록 평가	D.1. 의무기록 출입국 청탁	O	행동과 환경의 차별화 및 가교 인정 (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수면부문(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E. 기타	O	행동과 환경의 차별화 및 가교 인정 (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수면부문(전기, 물류, 구현, 시장) 등

평가영역	배점 기준 비율	배점 조정 가능 범위
A. 수현기관평가	50%	50 ± 5% (45 ~ 55%)
B. 교육수련프로그램 평가	30%	30 ± 5% (25 ~ 35%)
C. 전문의 평가	10%	10 ± 5% (5 ~ 15%)
D. 의무기록 평가	5%	5 ± 5% (0 ~ 10%)
E. 기타(과목별 특수성 고려)	5%	5 ± 5% (0 ~ 10%)
계	100%	-

<광고자료> 복록별 평가영역별 폐점 비율(개정기)		폐점 영역별 폐점 비율(%)				
구분	총점 (원점수)	A. 수년평 제기	B. 교육부 포함 평 제기	C. 전문점 제기	D. 의무기록 제기	E. 기타
내과	100	45.0	40.0	15.0	0.0	0.0
소아청소년과	100	45.5	35.5	16.0	3.0	0.0
신경과	97	20.0	25.6	7.2	6.2	0.0
정신간호의학과	106	34.0	50.9	15.1	0.0	0.0
외부과	100	20.0	63.0	17.0	0.0	0.0
외과	103	52.4	27.2	12.6	0.0	7.8
후부의과	90	40.0	45.6	3.3	6.7	4.4
재활의과	100	49.0	40.0	0.0	11.0	0.0
신경의과	103	66.0	34.0	0.0	0.0	0.0
성형의과	99	38.4	48.5	0.0	13.1	0.0
신우루과	100	46.0	51.0	3.0	0.0	0.0
내과	100	48.0	53.0	15.0	0.0	0.0
이비인후과	100	68.0	19.0	13.0	0.0	0.0
정기과	97.1	71.8	21.1	0.0	5.9	2.1
계통의과	98	53.1	28.6	0.0	10.3	8.2
의과통증의학과	230	56.5	2.2	17.4	8.7	15.2
영상의과	100	80.3	11.9	3.0	0.0	4.8
비뇨기과	99.5	56.9	14.4	16.6	0.0	12.2
진단검사의학과	146	50.0	30.1	9.6	0.0	10.3
네이버	100	70.0	30.0	0.0	0.0	0.0
가정의과	98	50.0	44.9	5.1	0.0	0.0
응급의학과	92	53.3	28.3	7.6	0.0	10.9
책의학과	100	65.0	35.0	0.0	0.0	0.0
저입증경의학과	100	56.0	32.5	11.5	0.0	0.0
최대값		80.3	63.0	17.4	13.1	15.2
최소값		5.0	0.0	0.0	0.0	0.0
평균		52.7	33.5	7.8	2.8	3.2
질적 평가	100	25.0	50.0	20.0	5.0	0.0
평당 평가	100	14.0	28.0	53.0	0.0	5.0

### 병원신입평가 결과의 활용

스력병의 시작

전공의 정원 책정

- ✓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기준 미달병원은 인턴수련병원으로  
격하 지정 및 그에 준하여 전공의 정원을 책정한다.
  - ✓ 전공의 정원 책정에 있어서 기준의 최소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당해년도 병원신임평가성적이 레지던트 수련병원 70%,  
개정의학과 수련병원 60%, 단과수련병원 60%에 미달될 경우와  
학회 수련실태조사가 불량할 경우 병원신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전공의 정원을 책정하지 않을 수 있다.

## 단계별 전공의 정원(안) 도출과정

- 1단계 : 법적 기준 및 병원신임평가 결과에 따른 1차 정원(인) 마련
    - 지도전문인 수, 진료실적, 병원신임평가 전료과목별 pass/fail 점수 적용
    - 현행 법적 규정 및 병원신임위원회 방침 적용
  - 2단계 : 1단계 정원(인)과 학회의견을 종합하여 2단계 정원(인) 마련
  - 3단계 : 합동회의를 통한 3단계 정원(인) 마련
    - 2단계 정원(인)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병원신임실행위원회, 각 전문과목학회가 참석하는 합동회의의 정원(인) 마련
  - 4단계 : 병원신임위원회 정원(인) 마련
    - 제2차 병원신임위원회를 통한 병원신임위원회 정원(인) 마련

## 병원신임위원회 주요 협의 내용



## 전공의 파견수련 원칙

병원의 육성 및 전공의의 진료교육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전공의 파견을 실시한다.

- 가) 모자법 약체질 수련병원

1) 모병원: 400병상 이상의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수련전문과목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하여 13개 이상은 운영 병원여야 한다.

2) 자병원: 수련병원으로 전인수련병원 지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되, 모병원으로부터 레지던트를 파견받아 수련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은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기준 중 전문 과목별 기준에 적합여야 한다.

3) 협약병원: 모병원과 자병원은 전공의 피관에 대하여 상호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의 서류를 병원신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간 결연약정은 병원신임위원회에서 괴고하는 「전공의 피관수련 모자병원 표준협약서」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2000.5.30)

4) 제출서류  
전공의 피관 신청서, 전공의 피관 신청 사용서, 모자병원 조서, 모자결연 협약서(서사본)

5) 병원신임위원회는 피관수련 신청을 받아 수련방법설대조서를 기초로 본 제도의 목적달성을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병원에 피관수련을 인정한다.

6) 모병원은 전공의 피관일정을 수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병원신임위원회 사무국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008.6.12, 신설)

- 병원신임위원회에서는 전공의 피관일정이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및 수련병원(지정) 및 전공의 정원정책 방침에 위반될 경우에는 전공의 피관일정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2008.6.12, 신설)

7) 근무조건  
가) 모병원에서 자병원으로 흡수·병합되는 기간은 1회 2월 이상 6월 이내로 한다.  
나) 모병원은 모병원 자체로 운영 및 운영 및 관리하는 자본으로, 자본으로 피관수련을 위한 저축금을 지정 및 관리한다.

전공의 파견수련 원칙

나. 모자협약 미체결 수련병원

- 1) 전공의 파견은 수련 교육을 목적으로 파견과목 레지던트 수련 병원, 전공의 파견수련 승인(또는 전공의 정원)을 신청한 전문분야 별로 대체 병원신임병원과 및 수련 병원이 의정부 병원신임위원회에서 수련 병원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병원에 한해 이루어져야 한다.
  - 2) 전공의 파견 기간은 전공의 1인당 연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3) 전공의 파견은 해당 학회 등의 및 병원신임위원회 승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해당 병원은 전공의 파견 시작일 15일 이전에 전공의 파견수련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동일대학부속계열 병원, 동일법인, 동일재단 병원은 해당 학회 등의 및 병원신임위원회 승인을 통해 전공의 파견이 가능하다. 단, 동일대학부속계열 병원은 파견일정을 수령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병원신임위원회 사고하고자 한다. (2008.6.12. 신설)

## 신경과 전공의 교육목표

현 행	개 정(안)
<p>1) 교육목표</p> <p>신경과 전공의로서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필수적인 신경학 및 인접분야의 지식과 기종검사 및 인자수사를 학습시키고 환자의 평가 및 견시결과를 이해하고 판단을 속달시켜 급·慢성신경과 시기하고 각종 검사에 관한 수기와 판단을 담실시켜 유능한 신경과 전문의로 양성화를 목표로 둔다.</p>	<u>신경과 전공의로서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필수적인 신경학 및 인접분야의 지식과 기종검사 및 인자수사를 학습시키고 환자의 평가 및 견시결과를 이해하고 판단을 속달시켜 급·慢성신경과 시기하고 각종 검사에 관한 수기와 판단을 담실시켜 유능한 신경과 전문의로 양성화를 목표로 둔다.</u>

## 연차별 교과과정

학술회의참석	원내 10회 이상	원내 60회 이상(동상인식단장보고들은 제외)
3년차 교내 내 과	<p>신종과의 여러 특수 분야에 대한 기본지식과 검사에 대한 수기와 판독법을 숙지하여 일상용을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신경학적 연구방법을 습득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년차과] 25차례의 치매 환경을 계속한다.</li> <li>2. 외래진료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그 처리를 익힌다.</li> <li>3. 뇌 MRI, 희석 유도전기, 경막하류마토스코피, 신경학검사에 관한 이론, 수기 및 핵진단을 학습, 솔직하게 함으로써 세 살 제 입증방법을 가능하게 한다. (풀어쓰기 타 병 원 교과 수업도 가능)</li> <li>4. 저도경관의 혹은 고난의 천공의와의 학술연구에 참여하여 신경학적 연구 방법론을 익힌다.</li> </ol>	<p>신경학의 여러 특수 분야에 대한 기본지식과 검사에 대한 수기와 판독법을 숙지하여 일상용을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신경학적 연구방법을 습득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년차과 25차례의 치매 환경을 계속한다.</li> <li>2. 외래진료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그 처리를 익힌다.</li> <li>3. 뇌 MRI, 희석 유도전기, 경막하류마토스코피, 신경학검사에 관한 이론, 수기 및 핵진단을 학습, 솔직하게 함으로써 세 살 제 입증방법을 가능하게 한다. (풀어쓰기 타 병 원 교과 수업도 가능)</li> <li>4. <b>각종 축제로 참가한 한동안에서의 축제로 차운</b>, <b>교내동호회경쟁대회의 PTD 등에 참가를 익힌다.</b></li> <li>5. 저도경관의 혹은 고난의 천공의와의 학술연구에 참여하여 신경학적 연구방법론을 익힌다.</li> </ol>

## 연차별 교과과정

서년차 교과내용	<p>수석 전공의로서 병실에서 환자진료를 감독하고 저년차 전공의와 학생의 일상실습을 지도하며 신경학 분야의 광범위한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의로서 자질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석 전공의로서 저년차 전공의의 입원 및 외래환자의 진료에 관한 사항을 충실히 지도감독한다.</li> <li>병실의 수석의 및 단과·자문의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외래환자 진료를 병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한다.</li> <li>신경학의 각 특수분야 중에서 일의를 선택하여, 최신 지견을 습득하고 지도교수 혹은 전문의 지도아래 학술 연구를 수행한다.</li> </ol> <p><b>▲ 각급, 중재 서료(면설현도통제서의 보록스 치료, 근설윤증후군예시의 ITB 등)를 동자적으로 수료한다.</b></p> <p><b>5. 면설화자(나홀로, 페깅법 등) 신경과 고문장환의 인성적 환자) 관리를 익힌다.</b></p>
-------------	---

## 전문의 시험 필수

논문제출	<p>수령기간 내 제1저자 논문 1편, 콜저 1편 이상 (단 학여도 1편은 대한신경과학회지에 게재, 단신보고는 한편만 인정). 영문판 <b>(대한신경과학회지Journal of Clinical Neurology)에 제1저자로 게재하는 경우는 1편만 계재하되도 논문 제출 요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된다.</b></p> <p><b>대한신경과학회 초록발표 2편이상</b></p>
------	--

### 2016년 전공의 정원책정 관련 전문과목학회 합동 회의 (2015년 10월 8일 대한병원협회)

- 보건복지부 정책방향**
  - 정원 구조 조정 지속(2013-2017)
  - 수도권 및 지방 균형 유지(6:4)
  - 기피과·목지·원제도 11과목(외과, 흉부, 산부, 비뇨, 결핵, 방사선종양, 진단검사, 병리, 가정, 학부, 예방)
  - 공공의료기관 정원비율(8%) 유지
  - 지방공공병원 활성화 및 수련역량강화를 위한 통합수련기관 별도 정원 지원 검토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정책 준수여부
    - 대형병원 대상 2016년 6-8월 시행
    - 방법: 의무기록확인 및 전공의 면담 예정(전공의 협의회)
    - 상별: 전공의 정원 감축/우수병원 기피과목 정원추가 배정
  - 리베이트 관련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 감축

### 2016년 전공의 정원책정 관련 전문과목학회 합동 회의 (2015년 10월 8일 대한병원협회)

- 병원신임실행위원회 전공의 정원책정 기준**
  - 국방부 및 신설대학부속병원의 정원책정은 병원임의 실행위원회에서 별도 심의 조정
  - 민원, 의무불이행, 자병원 정원 초과 파견 모병원 등은 별도 심의
  - 수련병원지정 최소, 지도전문의 수 기준 미달 → 차기년도 정원 미책정
  - 수련실태 조사 후 정원 변경 신청: 감원 신청은 수용 하나 증원 신청은 타과 감원을 전제로 조정(단, 육성 지원과목제외)
  - 신경과 정원 상한선은 병원 당 3명
  - 신경과 공공의료기관 비율: 2015년 6.5%, 2016년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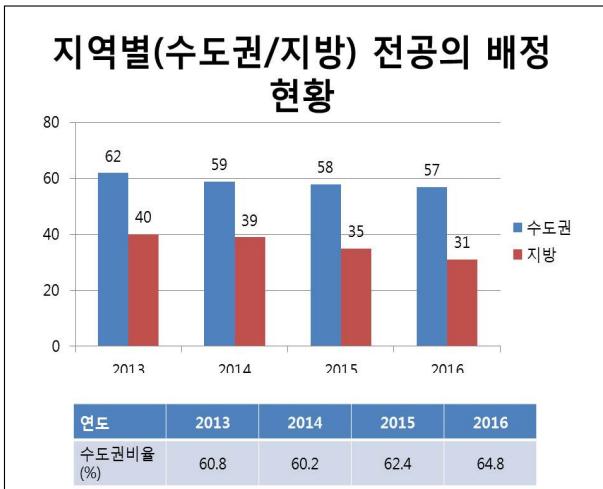
## 공지

- 공공의료기관(국립의료원) 전공의 정원 외 배정
  - 보건복지부 논의

## 2016년도 전공의 신청 및 배정 현황

2015년 93명 → 2016년 88명 → 2017년 82명

전공의 정원	2015년		2016년		2017년도 배정안	
	신청 [병원(인원)]	배정 [병원(인원)]	신청 [병원(인원)]	배정 [병원(인원)]	신청 [병원(인원)]	배정 [병원(인원)]
3	5 (15)	3 (9)	4 (12)	3 (9)	-	
2	33 (66)	22 (44)	30 (60)	21 (42)	-	
1	36 (36)	40 (40)	41 (41)	37 (37)	-	
<b>총계</b>	<b>74 (117)</b>	<b>65 (93)</b>	<b>75 (113)</b>	<b>61 (88)</b>		<b>(82)</b>



### 연도별 (2013 – 2016) 지역별 수련병원 및 전공의 배정 현황

지역	2013		2014		2015		2016	
	병원 (미배정)	인원 (%)	병원 (미배정)	인원 (%)	병원 (미배정)	인원 (%)	병원 (미배정)	인원 (%)
서울	26(-1)	41(40.2)	25(0)	40(40.8)	26(-1)	39(41.9)	25(-3)	36(40.9)
인천-경기	19(-2)	21(20.6)	20(-4)	19(19.4)	19(-3)	19(20.4)	19(-2)	21(23.9)
강원	3(-1)	2(2.0)	3(-1)	2(2.1)	4(-1)	3 (3.2)	4(-1)	3 (3.4)
충청	8(-2)	9(8.8)	8(-2)	8(8.2)	6(-1)	6 (6.5)	7(-4)	4 (4.5)
호남-제주	6(-1)	7(6.9)	6(-1)	7(7.1)	5(-1)	6 (6.5)	5(-1)	6 (6.8)
대구-경북	4(0)	7(6.9)	4(0)	7(7.1)	4(-1)	5 (5.4)	4(-1)	5 (5.7)
부울경	12(-3)	15(14.7)	12(-3)	15(15.3)	10(-1)	15 (16.1)	11(-2)	13 (14.8)

### 수련병원 별 전공의 배정: 2013 - 2015

전공의 정원	2013		2014		2015	
	신청	배정	신청	배정	신청	배정
3명	4	4	5	4	5	3
2명	22	23	38	23	33	22
1명	41	40	33	40	36	40
총계(전공의수)	97	102	124	98	118	93
총계(병원수)	97	98	76	67	74	65

- ### 수도권/지방 전공의 책정
- 현재: 수도권 비율이 늘고 있음
  - 수도권 전공의 비율 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신경과학회 수련실태평가서 문항 편성 및 배열

가. 지도전문의 정원 및 자격 (18+ $\alpha$ ) 최대27점  
 나. 시설 및 장비 근무인력(16.5)  
 다. 진료 및 진료실적(27.4)  
 라. 전공의 교육프로그램 및 수련실태 평가(23)  
 마. 연구활동 평가(13)

평가점수 : 97.9+ $\alpha$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현지 평가 시 심사위원 2인

# 신경과 학회 규정

---

- 1. 지도전문의 정의:** 신경과 수련병원 신경과에서 1년 이상 전문의로 수련지도경험이 있고 해당 수련병원 신경과에 전속인 경우(교수, 임상교수, 2년차 전임의, 임상staff(과장)).
- 2. 전속지도전문의의 정의:** 지도전문의 중 교수, 임상교수, 임상 staff, 3년차 이상 전임의로 실제적 전공의 교육을 하며 임상교수 대우를 받는 사람.

(1)신경과수련병원 신경과에서 전문의로서 전공의 지도경력이 **2013년 9월 첫째 월요일 현재 12개월 이상인(즉 2년 차 이상) 전임의 또는 임상강사는 지도전문의로 인정함(임상강사의 경우 병원에 따른 명성상의 차이로 대해서는 수련위원회에서 해석).**

- (2) **군병원 근무경력 불인정**
- (3) **해외 수련병원에서 정식 임상수련(clinical fellow) 경력은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4) **신경과 전문의라 할 자리도 타파 소속인 경우 불인정**
- (5) **신경과 수련병원이라 함은 '신경과 학회소속의 전공의가 있는 병원'이라고 정의함**

- 2. 직위는 대학병원인 경우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대우), 전임의(또는 임상강사)로 표기하고 기타 수련 병원은 과장, 전문의 등으로 표시함.**
- 3. 2013년 9월 이전에 퇴직 예정자는 기재하지 않음.**
- 4. 채용이 예정된 경우에는 예정 임명 연월일을 영기하여 서류를 제출한 후 정식 임용 후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함.**
- 5. 현 병원에서 전속지도 전문의로 근무기간이 48 개월 미만인 경우만 최근 48 개월간의 '파격 근무신경과 수련병원에서의 수련지도기간, 직위 및 병원명'을 표기할 것.**

신경과학회 지도전문의 점수		
• 출 지도	경쟁력 수	경쟁지지경쟁력 수
		점수
<b>지도전문의 점수: 신경학·가족의학·구강의학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전문의로서, 그 활동성이 학술·교육·사회·문화·기술 등에 대한 관심과 그에 따른 활동성이 확장되는 경우, 모집과 고수, 대체로 수료교정과 함께 적용되는 평가항목입니다.</b>		
3	0	-2.0
	1	0.0
	2	2.0
	3	4.0
4	0	0.0
	1	2.0
	2	4.0
	3	6.0
	4	8.0
5	0	2.0
	1	4.0
	2	6.0
	3	8.0
	4	10.0
	5	12.0
6	0	2.5
	1	4.5
	2	6.5
	3	8.5
	4	10.5
	5	12.5
	6	15.0

지도전문의 수 규정 변경 (2015년 8월 27일 수련교육심판위원회 통과)																			
As-Is	To-Be																		
N-2	N-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도전문의 확보 현황</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도별 병원수</th> <th>67</th> <th>79</th> <th>76</th> <th>74</th> <th>74</th> </tr> </thead> <tbody> <tr> <td>N-2 총 족률</td> <td>100%</td> <td>100%</td> <td>100%</td> <td>100%</td> <td>100%</td> </tr> <tr> <td>N-3 총 족률</td> <td>98.5%</td> <td>98.7%</td> <td>100%</td> <td>100%</td> <td>100%</td> </tr> </tbody> </table>		연도별 병원수	67	79	76	74	74	N-2 총 족률	100%	100%	100%	100%	100%	N-3 총 족률	98.5%	98.7%	100%	100%	100%
연도별 병원수	67	79	76	74	74														
N-2 총 족률	100%	100%	100%	100%	100%														
N-3 총 족률	98.5%	98.7%	100%	100%	100%														

- 관련과(영상의학과 neuro-intervention) 전  
임의 경력도 포함하기로 함. 단, 신경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경우로 한 함. 추후 다  
른 사안은 사안별로 결정
  - 현재 기준: 수련병원의 신경과 전문의 기간만  
인정

신경과	지도전문의 현황 및 자격
문항 1	지도전문의 현황(9월 첫째 월요일 기준)
문항 2	수련지도 경력
문항 3	전속지도 전문의의 결원

### 마. 연구활동 평가 (2012년 1월 1일-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외 포함)(총13점)

(1) 원저인 경우 대한신경과학회지(국문과 영문) 및 SCIE등재 논문은 6점, 대한신경과학회에서 인정하는 분과학회지 및 의학회에 등록된 타과학회지는 4점, 신경과 지부학회, 상업성 학술지 및 교내학술지 등은 2점으로 등급을 매김.
(2) 학회지 출판, 증례 및 단신, 학회지 출판 투고규정을 준수한 심포지엄 원고는 각 학회지 등급의 원저점수의 50%를 반영한다. 병원 자체 학술행사 심포지엄 원고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단행본 저술은 대한신경과학회지 출판에 준하여 3점을 부여 (단 인정여부는 수련위원회 검토후 결정).
(4) 교과서 저술은 핵심 당 0.5점을 부여하나, 수련병원 당 최대 1점을 넘을 수 없음.
(5) 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해당병원 신경과에 소속된 논문인 경우 위의 점수를 인정.
(6) 기타 공동저자는 위의 논문의 점수를 저자수로 나눈 점수를 부여. 다수의 소속전문의, 전임의 또는 전공의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경우 합산한다.
(7) E-pub only 가 아닌 경우 paper 1이 출판 기준임.
(8) 공동 제1 저자 혹은 공동 책임저자로 소속 병원이 다른 경우 각 병원별로 50%만 인정한다.
(9) 이렇게 인정된 논문 점수의 합을 해당병원의 소속지도전문의 수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
(10) 학회 발표 초록의 경우 1 저자만 인정하고 학회의 종류와 상관없이 1점( <b>no show 제외</b> )

## 2015년도 수련실태평가 결과

	총점	지도전문의	시설,장비	진료,검사	전공의교육	연구활동
만점	105	27	16.5	26.5	22	13
평균	103.8	26.3	16.2	26.5	22.0	12.8
2명	96.8	20.2	16.2	26.1	21.6	12.6
1명	90.7	16.2	15.9	26.3	21.7	10.6
최대값	104.5	27	16.5	26.5	22	13
최소값	64.1	5	12.8	15.8	13	1.1
75 %	93.9	18.4	16.1	16.3	21.7	11.5

## 2015 평가 결과: 진료실적

- 전체 진료실적을 1년차 전공의 숫자로 나눔(단, 당해연도 전공의 배정이 없는 경우, 1로 나눔)

## 2015년 진료실적

검사	2015년		평가결과		2016년 기준(안)	
	기준건수	배점	백분위	건수*	기준건수	배점
입원	<250	0	< 5%	683	<600	
	250, < 500	1	5%, < 10 %	683 - 738	600-650	
	500, < 750	2	10 %, < 20 %	738 - 872	650-700	
	≥ 750	3	≥ 20 %	872	≥ 700	
외래	<10,000	0	< 5%	18,652	<15,000	
	10,000, < 20,000	1	5%, < 10 %	18,652 - 21,306	15,000-17,500	
	20,000, < 30,000	2	10 %, < 20 %	21,306 - 27,177	17,500-20,000	
	≥ 30,000	3	≥ 20 %	27,177	≥ 20,000	
응급실	<350	0	< 5%	722	<600	
	350, < 700	1	5%, < 10 %	722 - 818	600-700	
	700, < 1,050	2	10 %, < 20 %	818 - 870	700-800	
	≥ 1,050	3	≥ 20 %	870	≥ 800	
협진	<500	0	< 5%	844	<700	
	500, < 750	1	5%, < 10 %	844 - 894	700-800	
	≥ 750	2	≥ 10 %	894	≥ 800	

전체 진료실적을 2015년 1년차 전공의 정원 수로 나눈 값

### 전체 진료실적을 2015년 1년차 전공의 정원 수로 나눈 값

질환군	2015년		평가결과		2016년 기준(안)	
	기준	배점	백분위	인원	기준	배점
뇌출증	<100	0	< 5%	207	<150	0
	100, < 250	1	5%, < 10 %	207 - 253	150-250	1
	≥ 250	2	≥ 10 %	253	≥ 250	2
경련 등	<50	0	< 5%	102	<70	0
	50, < 100	1	5%, < 10 %	102 - 106	70-100	1
	≥ 100	2	≥ 10 %	106	≥ 100	2
감염	<20	0	< 5%	31	<25	0
	20, < 40	1	5%, < 10 %	31 - 33	25-35	1
	≥ 40	2	≥ 10 %	33	≥ 35	2
척수	<20	0	< 5%	33	<25	0
	20, < 40	1	5%, < 10 %	33 - 36	25-35	1
	≥ 40	2	≥ 10 %	36	≥ 35	2
퇴행성	<20	0	< 5%	42.0	<30	0
	20, < 40	1	5%, < 10 %	42.0 - 42.4	30-40	1
	≥ 40	2	≥ 10 %	42.4	≥ 40	2
탈수증	<20	0	< 5%	26.0	<20	0
	20, < 40	1	5%, < 10 %	26.0 - 27.0	20-30	1
	≥ 40	2	≥ 10 %	27.0	≥ 30	2
통증	<10	0	< 10 %	<5.0	<5	0
	≥ 10	1	≥ 10 %	5.0	≥ 5	0.5

## 2015년 평가 결과: 검사 실적

### • 점수 배점

- EMG는 1/0.5/0점, 그외는 0.5/0.3/0점

### • 점수 배분 기준

- 20 퍼센타일 이상: 만점
- 10 ~ 20 퍼센타일 이상: 중간점수
- 10 퍼센타일 미만: 0점

- 새로운 조사 항목: ENG, INM, PSG

## 2015년 평가결과

검사	2015년		평가결과	
	기준건수	배점	백분위	건수*
EEG	<600 600 - < 850 ≥ 850	0 0.3 0.5	< 10 % 10 %, < 20 % ≥ 20 %	< 747.4 747.4, < 926.6 ≥ 926.6
NCV/EMG	< 1800 1800 - < 2000 ≥ 2000	0 0.5 1	< 10 % 10 %, < 20 % ≥ 20 %	< 1892.6 1892.6, < 2084.2 ≥ 2084.2
EP	< 150 150 - < 180 ≥ 180	0 0.3 0.5	< 10 % 10 %, < 20 % ≥ 20 %	< 182.4 182.4, < 225.0 ≥ 225.0
초음파	< 300 300 - < 500 ≥ 500	0 0.3 0.5	< 10 % 10 %, < 20 % ≥ 20 %	< 379.2 379.2, < 519.2 ≥ 519.2
신경심리	< 100 100 - < 150 ≥ 150	0 0.3 0.5	< 10 % 10 %, < 20 % ≥ 20 %	< 163.6 163.6, < 185.4 ≥ 185.4

\*2016년 평가: 2015년 기준 유지

## 2015년 시범 조사 결과: ENG, INM, PSG

검사항목	2015년				2016년 기준(안)
	시행병원	평균 (최소 - 최대)*	백분위*	건수*	
ENG	51 (68.0%)	1,043 (2 - 8,030)	20‰ 10‰ 5‰	37 10 5	0.3점: ≥ 50 0점: < 50
INM	48 (64.0%)	209 (1 - 4,072)	50‰ 40‰ 30‰ 20‰ 10‰	45 23 12 2 1	0.3점: ≥ 10 0점: < 10
PSG	51 (68.0%)	148 (2 - 975)	50‰ 40‰ 30‰ 20‰ 10‰	91 66 46 29 11	0.3점: ≥ 30 0점: < 30

\*검사시행 병원만 포함한 결과임

## 검사실적

- 건수 산정은 검사 청구 항목별 산정
  - 예: NCV EMG
  - 차용 대상: ENG/VOG, ANS function test 등
- Goggle video Frenzel 검사는 ENG/VOG 포함하지 않음
- 신경심리검사
  - SNSB 등 Battery 형식으로 구성된 검사는 한 건으로 포함 (MMSE, CDR 등은 불인정)
- Autonomic function test, blink reflex 분류:
  - 근전도 항목에 포함, 분리?

## 학술 및 연구 활동

- 학회 강의:
  - 강의록이 종설 형식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해 연구 업적으로 인정
- 학생 강의용 교재 연구업적 불인정 포함하기 어려움
- 의사회, 세미나 등에서 발표 자료는 연구활동 불인정
- 지부학회에 발표와 강의록(종설)의 연구 업적 인정
  - 지부학회 주관단체가 신경과학회 관련 학술단체고 정기 학술지가 존재하는 경우 인정하겠음
- SCI/SCI(E) 미등재 해외학술지는 '대한신경과학회에서 인정하는 분과학회지,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의 간행지 또는 KoreaMed에 등록된 타과학회지 : 4점' 준용

## 전공의 수련교육 프로그램 평가



## 수련교육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과 기능

수련교육 결과의 전단과 쟈료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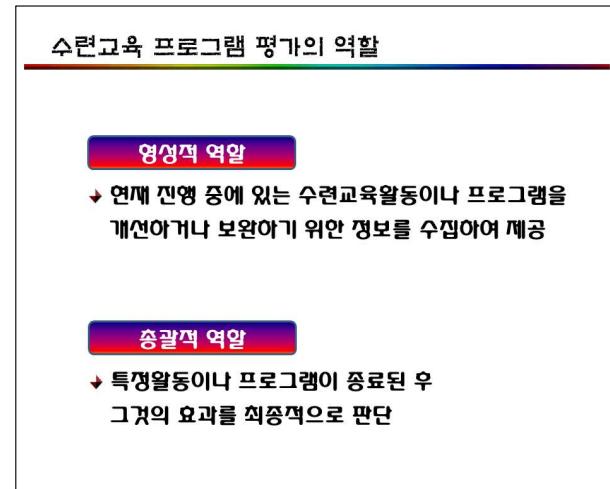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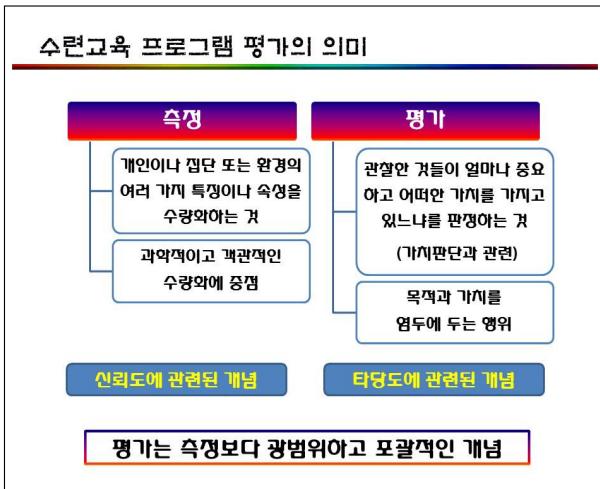
생활지도상담의 쟈료수집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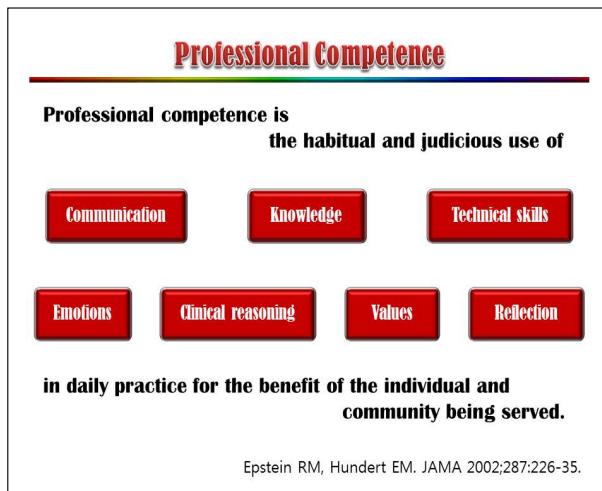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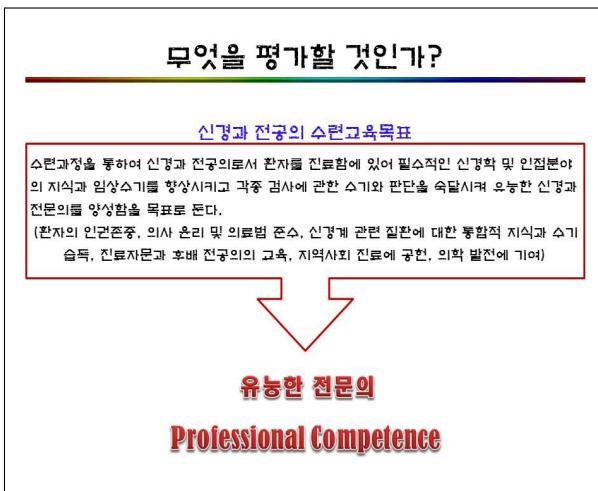
학습측면의 기능

수련교육과정 및 학습지도법의 개선기능

수련교육 계획의 개선기능

수련교육 정지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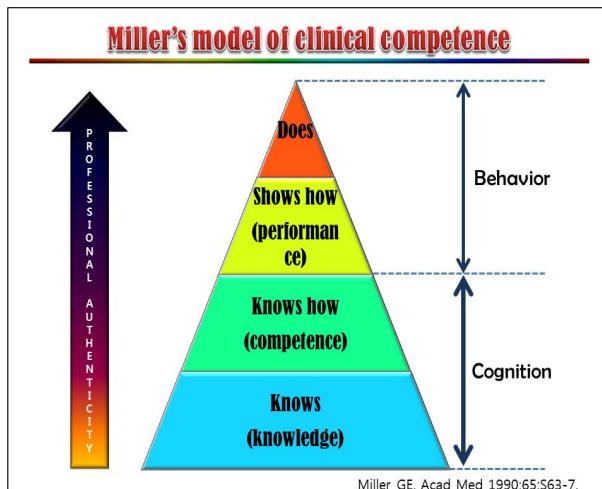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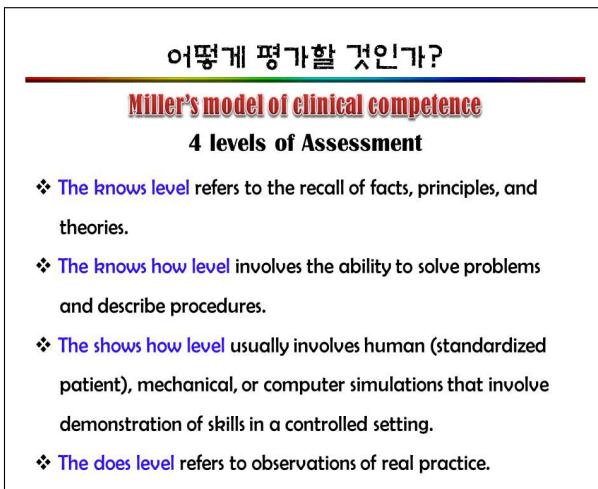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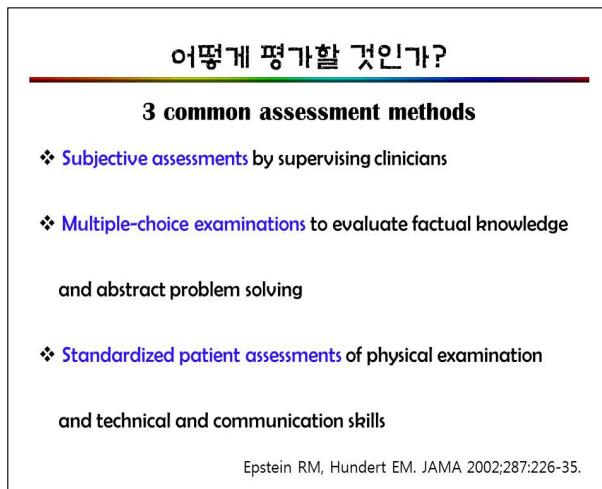
**6 core compet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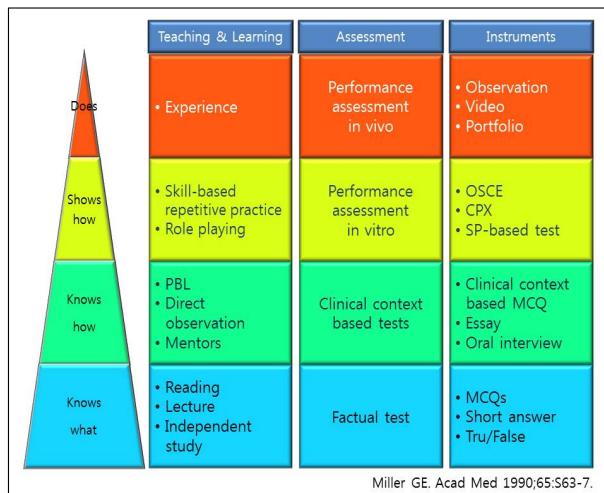
The Neurologist • Volume 10, Number 2, March 2004      Competencies in Residency Education

TABLE 1. ACGME Core Competencies

Patient Care	Care that is compassionate, appropriate, and effective for the treatment of health problems and for the promotion of health.
Medical Knowledge	About established and evolving biomedical, clinical, and cognitive sciences and the application of this knowledge to patient care.
Practice-Based Learning And Improvement	That involves investigation and evaluation of their own patient care, appraisal and assimilation of scientific evidence, and improvement in patient care.
Interpersonal Skills and Communication	That result in effective information exchange and teamwork with patient, their families, and other health professionals.
Professionalism	As manifested through a commitment to carrying out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adherence to ethical principles, and sensitivity to diverse patient populations.
Systems-based Practice	As manifested by actions that demonstrate an awareness of and responsiveness to the larger context and system of health care and the ability to effectively call on system resources to provide care of optimal value.

Minimum Program Requirements Language. Approved by the ACGME September 28, 1999. www.acgme.org





### 수련교육 프로그램 평가 (예시)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 Evaluation Policy and Implementation

Residents are evaluated by several different mechanisms and at different intervals.

**6 Core Competence**

- Patient Care
- Medical Knowledge
- Practice Based Learning and Improvement
- Interpersonal and Communication Skills
- Professionalism
- Systems Based Practice

### 수련교육 프로그램 평가 (예시)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 Evaluation Policy and Implementation

Residents are evaluated by several different mechanisms and at different intervals.

**Evaluation methods**

- Daily oral feedback
- End of rotation evaluations
- Quarterly evaluations
- In-Training Exam (ITE) scores
- Monthly Test scores
- Multi-rater evaluations

경청에 감사드립니다.